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6.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6월 9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6월 17일

(제148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보건환경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(법률 제5393호, 97.8.28 개정공포) 및 같은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5672호, 98.2.24 개정공포) 이 98.3.1일부로 시행되면서
- 지방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 개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1) 위원회 명칭 변경
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(지방환경위원회) ⇒
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(지방조정위원회)

2) 위원의 임기조정 (3년 ⇒ 2년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

3) 조정비용(수수료)에 관한 조문변경

-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선·조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자 및 조정에 참가를 신청하는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음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○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대비표